

제3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Q&A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질의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다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는데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A.답변 업종별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합니다.(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사업설명 참조)

Q.질의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답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Q.질의 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에 접속하시면 전국 1167개 상권의 상세한 상권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19여개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Q.질의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3-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기초·전문교육, 상품화 지원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실제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 까지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자금(융자), 사업화 지원(보조금) 등
 - 창업교육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및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 지원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 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
 - *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22.1월, 6월 예정(연 2기수 운영)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교육)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지역별 교육대상자 선발(15개 지역, 기수 당 250명 내외)
 -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사관학교	연락처	장소
서울/강원	☎ 02-717-9690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부산/울산/경남	☎ 051-463-0212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대구/경북	☎ 053-353-7667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광주/전남/전북/제주	☎ 062-367-0135	광주 서구 천변차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경기/인천	☎ 031-204-3014	경기 수원 영통구 반달로 87, 4층
대전/충북	☎ 042-363-7494	대전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 (창업자금)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심사
 -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 교육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 등을 심사
 - * 세부 심사기준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시스템 직접입력)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비 후 제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 확인서(선택) 등

처리절차

구분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선정결과 통보	⇨ 창업교육	⇨ 점포경영체험 (상품화지원)	⇨ 사업화지원
15기	'22.1월중 ~'22.2월중	'22.2월말	'22.3월초 ~4월초	'22.4월말 ~8월말	'22.9월초 ~12월말
16기	'22.5월중 ~'22.6월말	'22.7월초	'22.7월중 ~8월말	'22.9월초 ~12월말	'23.1월초 ~'23.4월말

* 세부 일정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규모

- 600명 내외(예산 197.5억원)

* '21년 지원현황 : 417명(예산 189.5억원)

문의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newbiz.sbiz.or.kr) ☎ 1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54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 시 부담금이 있나요?

A. 네, 교육 수수료 후 사업화 지원(보조금)을 받을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50%)

3-2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역·업종별로 상권·입지·경쟁·수익정보 등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및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전국민(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상권분석) 선택한 지역에서 관심 업종의 평균 매출액, 유동인구 등 관련 정보 제공

* 제공업종은 대분류 8종, 세세분류 477개

업종	선택상권·행정구역별 선택업종 업소 추이, 업종 생애주기, 업력현황 등
매출	선택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주중·요일별·시간대별·성별·연령대별 매출 비율 등
인구	선택영역 성별·연령별 주거/직장인구,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월별 유동인구 추이,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별 분포 등
지역	성별·연령별·행정동별·금액구간별 소득/소비, 주요시설 추이·현황, 학교시설, 교통시설

- (경쟁분석)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
- (입지분석)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 정보 제공
- (수익분석)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 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 제공

음식(21)	아이스크림판매,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 국수만두칼국수, 도시락전문, 떡볶이전문, 라면김밥분식, 죽전문점, 한식백반한정식, 해장국감자탕, 양식, 일식수산물, 중국음식, 간이주점, 갈비삼겹살, 곱창양구이전문, 족발보쌈전문, 호프맥주, 후라이드양념치킨
--------	---

소매(12)	건강식품, 슈퍼마켓, 편의점, 신발소매, 안경원, 일반의류, 캐주얼스포츠의류, 꽃집꽃배달, 화장품판매점, 사무문구용품, 인테리어욕실용품, 일반가구소매
서비스(12)	발네일케어, 비만피부관리, 여성미용실, 노래방, 모텔여관여인숙,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어린이영어, 학원(음악미술체육), 학원(입시), 세탁소빨래방, 자동차정비

*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제공업종 동일

- (경영컨설팅) 15개 업종에 대한 상권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방법 컨설팅 실시

음식(15)	한식/백반/한정식, 커피전문점/카페/다방, 갈비/삼겹살, 후라이드/양념치킨, 라면/김밥/분식 등 15개 업종
--------	--

- (점포이력) 특정 위치의 창업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 이력 정보 제공
- (업종추천) 7개 광역시의 전 업종에 대해 상권적합도(업종구성, 주요 고객 구성 등) 및 항목별(매출 성장성,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업종 제시
 - * 7개 광역시 :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대전
- (창업기상도) 7개 광역시의 5개 업종(커피, 치킨, 한식, 편의점, 미용실)에 대한 유동인구·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 예측 정보 제공

'21년 서비스 개선 내역

- (업종 확대) 입지 관련 데이터를 통해 출점지 추정 매출 및 소비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입지분석' 서비스에 매출예측 업종 확대(5개→15개)
 - * 제공업종: 한식/백반/한정식, 커피전문점/카페/다방, 편의점, 후라이드/양념치킨, 여성미용실, 등 15개 업종
- (분석서비스 강화) 선택 업종, 지역에 적합한 입지를 예측해 주는 신규 서비스 및 도보거리 등 변수를 활용하여 상권영역 자동 생성 서비스 제공
- (구독서비스 제공) 관심 지역 및 업종 선택 시 정기적으로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보고서 제공

이용방법

- (포털) 검색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이용
- (인터넷)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biz.or.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안드로이드마켓·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앱 설치 후 이용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헬프데스크 : 1644-5302

Q&A

Q.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언제 갱신되나요?

A. 14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19여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갱신되며,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3-3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舊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이버평생교육원)

소상공인의 전문능력 향상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업종특화 및 업종공통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바우처 형식, 민간교육기관이 수행)
 - * 후속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
 -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한 업종별 기술교육, 중장년층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현장교육 등 실습형 교육지원(국비 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수행)
- 전용교육장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IT관련 스마트 교육 중점 지원(5개 전용교육장)
-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r.kr)의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한 업종별·수준별·대상별 매주 정기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지원
 - 지식나눔터 :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보, 노하우, 지식을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eduopen.sbiz.or.kr) 지원

신청·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edu.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현장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교육신청' 클릭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처리절차

- 전문기술교육



- 경영개선교육



지원규모

- 50,000명 내외(예산 107.59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21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
- 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eduopen.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Q&A

Q.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신 후 교육비 신청을 해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교육생 계좌로 교육비의 90%(50만원한도)를 지원해드립니다.

3-4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대상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 개선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드·디자인, 세무, 특허 등) 제공

- 신청·접수**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 확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00개 업체 내외(예산 8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042-363-7833~4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5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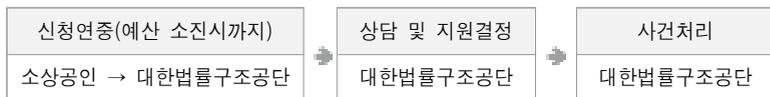
- 신청·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 판단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0개 업체 내외(예산 1억원)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3~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2인가구: 3,860,000원, 4인가구: 6,095,000원 <2021년 기준>

3-6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름

신청요건

구 분	신청 요건(① 또는 ②)
(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준비단계	① (예비)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② 설립 6개월 미만
초기단계	① 설립 1~3년차
성장단계	① 설립 4~6년차이면서 조합원 10인 이상(연합회 포함) ② 설립 4~6년차이면서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 10% 이상 증가
도약단계	① 설립 7년차 이상이면서 조합원 20인 이상 ② 설립 7년차 이상이면서 최근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 20%이상 증가

지원내용

- 교육 : 교육, 상담,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사업화 자금지원 등 지원
-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공동장비, 브랜드·마케팅·R&D·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
- * 보조금 지원비율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판로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라이브커머스 및 오프라인 박람회, 바이어 유통상담회 등 판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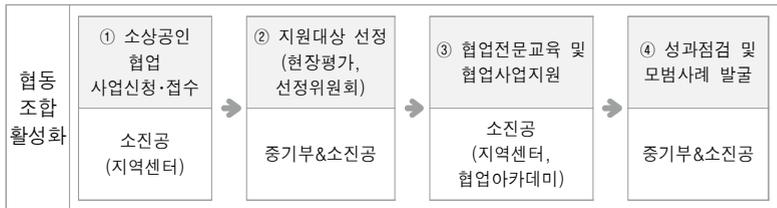
- 신청·접수**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수익 또는 고용 창출, 조합규모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협업성과 등
-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95개 조합(158억원)
 - * 공동사업(145개 내외), 판로사업(150개 내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4,7720~5),
 -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임

3-7

경험형 스마트마켓

새로운 스마트 경험 제공하는 플래그십형 마켓 구축 지원

지역주민에게 365일 에코 쇼핑(심야시간 친환경 무인 쇼핑)과 새로운 스마트 경험을 제공하는 플래그십형 스마트마켓 구축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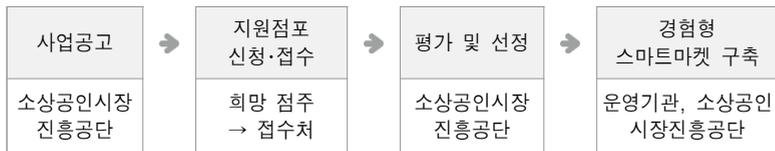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아래의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동네슈퍼, 동네상점 등)
 - ①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② POS기기 및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사용 중인 점포
 - ③ 소매업(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상점)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마케팅 등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 (창업단계) BM분석 및 체계구축, 브랜딩·디자인 구축 등 지원
 - (성장단계) 스마트 기술 도입, 모바일 접목, 마케팅·판로, BM 고도화 등 지원
 - (대표단계) 스마트화, DB구축, 규격/인증, 글로벌화 등 지원

- 신청·접수**
- 모집공고(홈페이지 등)를 통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지원예산 40억원 내외

- 문의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실 : (042) 363-7741~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 204-7854, 7837

3-8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가맹점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맹본부 지원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메뉴 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등을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도입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마케팅 등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 (창업단계) BM분석 및 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구축 등 지원
 - (성장단계) 스마트 기술 도입, 모바일 접목, 마케팅·판로, BM 고도화 등 지원
 - (대표단계) 스마트화, DB구축, 규격/인증, 글로벌화 등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c.sbiz.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업체 선정 : 상생협력 계획·실적, 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 계획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사본, 최근 3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15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21년 지원현황 : 14개 프랜차이즈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5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41, 7743, 774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9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량 평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등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내용 ● 가맹본부·가맹점지원·계약·시스템·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등급	지원내용	비고
I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 입성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II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가맹본부·계약·가맹점지원·관계·시스템성과 등 5개 영역을 평가하여 4등급(I~IV)으로 등급화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c.sbiz.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접수(평가비용 : 160만원)

제출서류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등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가능

처리절차



지원규모 ● 업력 최소 1년 이상인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대기업, 휴·폐업, 세금체납,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 ▶ 정보공개서 미등록한 경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044-204-785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41, 7743, 774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1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협업을 통한 공동개발, 집적지 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

자율사업 유형

-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접수 ●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문의

제출서류 ● 소공인 확인서류, 사업신청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예산 126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6, 79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21년말 기준) 〉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서울독산의류봉제센터	070-4206-1773
2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봉익주얼리센터	02-741-8755
3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장위의류봉제센터	02-919-9623
4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	02-741-5365
5	서울	광진구(중곡동)	의류봉제	서울광진의류제조센터	02-467-8251
6	경기	포천시(가산면)	가구제조	포천가구제조센터	031-539-5093
7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고양장항인쇄센터	031-913-9403
8	경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군포당정금속가공센터	031-454-4881
9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신흥전기장비센터	032-234-5910
10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품	성남상대원식품제조센터	031-750-2870
11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타기계·장비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	070-4170-5973
12	경기	안양시(관양동)	전자부품	안양전자부품제조센터	031-8045-6711
13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용인영덕전자부품센터	031-8067-5041
14	경기	화성시(팔탄면)	기타기계·장비	화성향남기타기계장비센터	031-354-3641
15	경기	화성시(동탄면)	전자부품	동탄전자부품센터	031-377-4165
16	경기	시흥시(정왕동)	전기장비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070-7784-8802
17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장비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	032-723-9983
18	인천	동구(송림동)	기타기계·장비	인천송림기타기계장비센터	032-589-4011
19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품(인삼)	충남금산인삼센터	041-750-1621
20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청주중앙인쇄센터	043-299-1081
21	대전	대덕구(상서동)	금형제조	대전상서금속가공센터	042-939-4827
22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장비	대전오정기타기계장비센터	042-629-7728
23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정동인쇄센터	042-226-5556
24	전남	무안군(청계면)	도자기제조	전남무안도자제조센터	061-450-6357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25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전북순창장류제조센터	063-652-1034
26	전북	전주시(팔복동)	금속가공	전주팔복금속가공센터	063-219-0397
27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서남인쇄센터	062-236-5013
28	대구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대구대봉의류봉제센터	053-783-3399
29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성내주얼리센터	053-219-4422
30	대구	북구(노원동)	안경제조	대구노원안경제조센터	053-350-7862
31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제조	부산범일의류제조센터	051-631-7220
32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 가방, 신발	부산범천가죽가방신발센터	051-890-2128
33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범천귀금속센터	051-636-7510
34	경남	김해시(진례면)	도자기제조	김해진례도자센터	070-4903-5545

3-11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30백만원, 80%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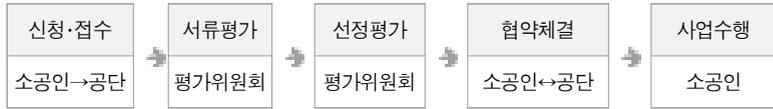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차비 등)
온라인마케팅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등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 지원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소공인 확인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218개사 내외(예산 76.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3-12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화 지원사업 참여 중인 업체

지원내용

- 도입, 제품·기술 개발비용 지원(49백만원, 70% 한도)

〈세부지원내용〉

지원항목	주요내용
스마트 컨설팅	스마트 전문가 매칭(기술·공정·시장진단·사업화) 컨설팅 지원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시약·재료비, 시제품·시작품 등 제작경비
위탁개발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

〈세부지원유형〉

지원유형	주요내용
①공정개선형	수작업 공정개선, 기초데이터 관리 등 H/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②생산관리형	자재 입고·생산·출고실적 집계, 생산관리 등 S/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③서비스복합형	고객 주문-생산-판매 과정을 자동연계 등 복합형 스마트공방 구축(B2C)
④제품기술혁신형	제품·기술 개발에 스마트기술 접목 등 제품·기술혁신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⑤컨소시엄형	3개사 이상의 소공인이 데이터 등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공방 구축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소공인 확인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00개사 내외(예산 49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3-13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집적지 혁신성장 기반의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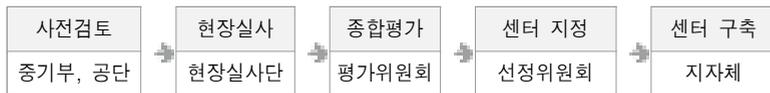
행정구역	기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 지원내용**
- 소공인 집적지에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용의 50% 이내 지원(25억원 내외)

- 신청·접수**
- 모집 중(~'22.1.28),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참고

처리절차



- 지원규모**
- 복합지원센터 구축 3개 내외(예산 75억원)
* '20년 지원현황 : 복합지원센터 구축 3개(예산 75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h.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3-14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중인 업체(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포함)

지원내용 ● 작업장 개선 비용 지원(4.2백만원, 70%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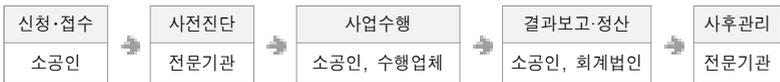
지원항목	주요내용
에너지효율 개선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 향상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안전 조치	재해 예방을 위한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조치 품목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00개사 내외(예산 84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9,790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3-15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성공CEO의 노하우 전수와 보육을 통해 소상공인별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성공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상생모델 확산

지원대상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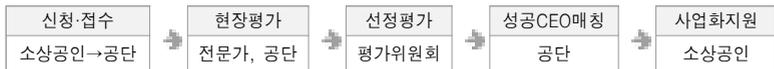
- 소상공인-성공CEO 연계 사업화지원(10백만원, 100%) 후 성과를 사회환원

지원항목	주요내용
기본교육	경영·서비스 개선,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등으로 구성된 교육 운영
사업화지원	성공CEO 매칭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기존상품개선, 신규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각종 사업화 항목을 지원 * 국비 100%, 사업화지원금의 10%와 성과(이익)의 일부는 사회환원
판로지원	선정업체의 우수상품을 온라인몰 입점지원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신청·접수

- '22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70개사 내외(예산 23.2억원 : 혁신형소상공인 관리 포함)
* '21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88개사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 : 042-363-7981, 79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이익공유형사업화」 참고

3-16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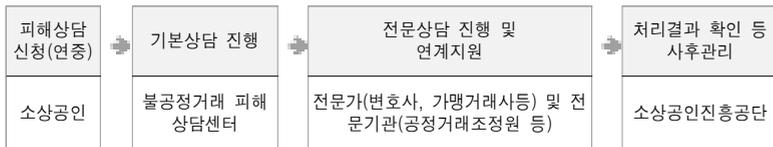
지원내용

- (상담지원) 전국 70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전문가 상담) 본부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신청·접수

- 전국 70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 홈페이지(<http://www.sbiz.or.kr/unfair/main.do>) 접수
- 전화상담 접수(1599-0209)

처리절차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소상공인지원공단 경영지원실 법무지원팀 : 042-363-7615, 7616

3-17

온라인 판로지원

온라인 판로채널 입점 지원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진출 쏠주기를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역량강화) 소상공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 및 상품성 개선 컨설팅 실시하고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홍보·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
-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 V-커머스, 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O2O 플랫폼(배달앱 등) 활용, 해외쇼핑몰 진출 지원 및 온·오프라인 융합 판매전 개최
-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교육
- (기반마련) 소상공인 전용 쇼핑몰(가치샵시다 플랫폼) 운영,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등이 가능한 미디어 활용시설 운영(3개소)
 -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수입 창출 등을 위해 반찬·간식 등을 정기 배송하는 구독경제화 신규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 진출 지원 대상 확대 ('20.4만개사 내외 → '20.5만개사 내외)
-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구독경제화, 스마트 플래그쉽 스토어 등 신규 지원

신청·접수

- 상시 모집('21년 예산 소진시까지)

- * 아임스타즈(<http://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주요상품정보,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유통센터 : www.imstars.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biz.or.kr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 044-204-7284, 7285

3-18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0%대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구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가맹 가능)

지원내용 ● 가맹점
- 결제수수료율 0%대 적용

연매출액	8억이하	8억~12억	12억 초과
수수료율	0%	0.3%	0.5%

※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결제수수료 : 1.2%

●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결제수수료 : 1.2%
- 인프라 및 홍보·마케팅 지원

구분	내용	비고	
인프라	QR키트	QR세트(키트, 스티커, 설명서) 보급	
	POS기기	기존 POS기기 업데이트	
	QR단말기	보급형 단말기 보급	
홍보·마케팅	지역별홍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예산	지방비 매칭
	홍보물제작 등	디지털 홍보, 이벤트, 홍보물 제작 등	
	협업공동마케팅 등	결제사업자 및 협·단체와공동 마케팅	

● 소비자 : 직불결제,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 없이 자동 집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40% 소득공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경품 및 리워드 이벤트

신청·접수

- 연중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등

제출서류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 * 1인 기업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맹 신청 가능

처리절차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3, 7877
-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디지털전략실 : 042-363-7736, 7737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 02-2095-5957, 5928, 5946
- 콜센터 : 1670-0582
- 홈페이지 (http://www.zeropay.or.kr)

Q&A

소
비
자

Q. 제로페이는 어떻게 결제하는 건가요?

A. 제로페이 결제방식은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1. 매장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에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
2.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으로 QR코드를 생성하면, 매장 직원이 스캐너로 휴대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

Q.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나요?

A. 제로페이는 오픈플랫폼으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앱(○○페이, 시중 은행앱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 기업은행, 대구은행, 농협(NH 앱개시, 올원뱅크), 광주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수협, 하나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하나카드, 케이뱅크, 핀트, 네이버 페이, 페이코, 티머니, 트립패스, 체크페이, 유비페이, 비플제로페이, 스마일페이, 뱅크페이, 머니트리, 레일플러스, 로드페이, sk페이, SSG페이, 롯데멤버스, 핫플레이스 등의 어플에서 사용 가능

Q. 제로페이 가맹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A. 플레이스토어에서 지맵(Z-MAP)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내 주변, 전국에 있는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A

소
상
공
인

Q. 제로페이 가맹하려면 가맹비는 없나요?

A. 제로페이는 가맹비용이 없습니다. 가맹 가입을 할 경우 QR키트, POS기 업데이트, 단말기 등의 인프라와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습니다.

Q. 가맹점주는 결제내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A.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제로페이 결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결제취소 기능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원도 앱을 통해 직원등록을 신청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이후 결제내역 관리, 결제취소, QR코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3-19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100년을 이어갈 우수한 소상공인 발굴 및 성장지원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 (국민추천의 경우, 업력 20년 이상)
 -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유의사항

- 업력산정 :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력 포함 산정(증빙제출 必)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백년소공인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지원내용**
- (홍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시설·판로) 노후 환경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지원
 - * '22년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 (연계지원)
 -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
 -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마케팅, 경영관리 등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 (금융) 혁신형소상공인 융자금리 우대 (공고문 참조)
 - (신청우대) 중소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 (신청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E-mail(100year@semas.or.kr) 접수병행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內 국민추천 페이지를 통해 타인이 추천 가능
- (신청기간) '22.1~(연중 수시신청)
- (평가기준)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업체 기술서, 매출액 및 고용 관련 증빙자료,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처분 및 포상이력 확인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81/7984/7985),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7), 홈페이지(www.mss.go.kr)

Q&A

Q.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 시 업종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네,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가업승계의 경우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3-20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오더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상저를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 중인 자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 ① 스마트기술 :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국비지원 70%, 상점당 최대 45만원 이내)
- ② 스마트오더 :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지원(국비지원 100%, 상점당 최대 35만원 이내)

〈스마트상점 기술 예〉

(오더) 모바일 등을 이용한 주문·예약·간편결제	(스마트미러) 스타일링·피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	
		
(스마트 메뉴보드) 메뉴 제공, 신제품 홍보, 이벤트 안내	(키오스크) 주문·결제 등이 가능한 무인 주문기	(서빙로봇)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 실내에서 서빙 기능 제공
		

신청·접수

- 상인회·번영회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하고, 광역 시·도에서 취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신청
 - * 신청 절차 : 상인회·번영회 → 시·군·구 → 시·도 → 소진공
- 업종별 협·단체가 공문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메일로 신청
 - * 신청 절차 : 업종별 협·단체 → 소진공

제출서류

- 스마트상가 총괄신청서, 스마트상가 운영 계획서, 예비 스마트상점 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 상세 내용은 2021년 사업공고(3월)를 통해서 확인 가능

처리절차



지원규모

- 스마트상가 100곳(스마트상점 약 2만개)
 - * '20년 지원현황 : 스마트시범상가 55곳 지원(스마트상점 약 4천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4,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혁신실 : 042-481-7731, 7732, 7735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3-2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취업·재창업 등 재기 여건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내용 ● (선제적 경영지원) 업종별·분야별 컨설턴트 그룹을 통한 경영현황분석 및 문제를 도출하고 이의 해결을 통한 경영개선 전략수립, 경영개선 자금지원

* 업종전환 지원금액 상향(최대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 (폐업 지원) 폐업신고 및 행정, 법률·컨설팅·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원스톱으로 패키지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분야 컨설팅

- (법률자문) 임대차, 노무, 가맹 등 법률 자문 지원

- (채무조정)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 (점포철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비용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

● (재창업 지원) 폐업소상공인 중 재창업의지와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지원

* 사업화 지원금액 상향(최대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 (재취업 지원) 민·관·학·공 협업 확대를 통해 성별·연령별 구직·구인 수요를 상호연계한 취업교육 및 근속 제고를 위한 전직장려수당*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소상공인 여부 등 사업별 공고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1,139억원, 54,975건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69, 7823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Q. 경영개선·사업화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경영개선·재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해 전문가 그룹의 경영위기진단, 진단유형에 따른 피보팅 전략수립, 폐업원인 분석 및 재창업 유망·특화·융복합 업종별 창업교육, 재창업 희망 업종별 트렌드 분석 및 성공전략 수립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를 지원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3-2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
 - * 도·소매업 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
 -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 가입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가입방법

- 온라인 가입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 앱
- 방문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공제금 지급 지급내용

- 지급 사유 : 폐업, 사망, 퇴임(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자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월 5~100만원)에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
 - * 기준이자율 : 폐업·사망시 2.5%, 노령·퇴임시 2.2%(‘21.1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기타 혜택

-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 * 소득공제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 공제금 보호 :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 : www.8899.or.kr.
- 노란우산 콜센터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3~4

Q&A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은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 운영 중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이며,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위기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과 달리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 가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공제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제 부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으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의 90% 한도 내에서 연이율 2.8%(‘21년 1분기)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3-2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고용보험 가입률제고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7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5-7등급 20%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신청·접수 ● (온라인) go.sbiz.or.kr
● (방문) 전국 7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접수

처리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 보험료 환급

지원규모 ● 36.29억원, 18,000여개 업체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8, 7867
● 국번없이 1357
● 카카오톡 채널(@gobo1)

Q&A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신청하는 건가요?

A. 네, 소상공인(사업주)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신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언제하고, 필요서류는 뭔가요?

A. 지원신청은 예산소진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만 신청하시면 5년간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24

소상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제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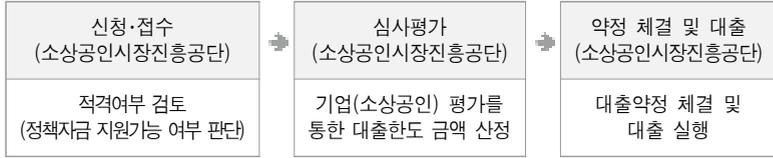
-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2,5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자금 접수기간은 매월 정해져 있나요?

- A.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매월 마지막주에 3~5일간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단 직접 대출 일체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심사역의 사업장 방문 후 사업성 종합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접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5

성장촉진자금

장수 소상공인의 재정장 및 재도약 지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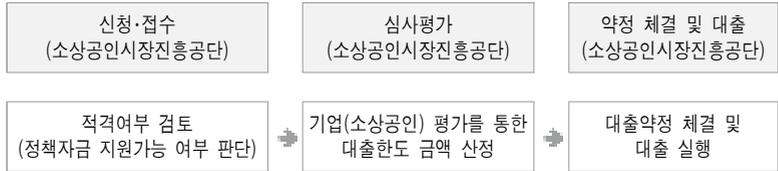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대리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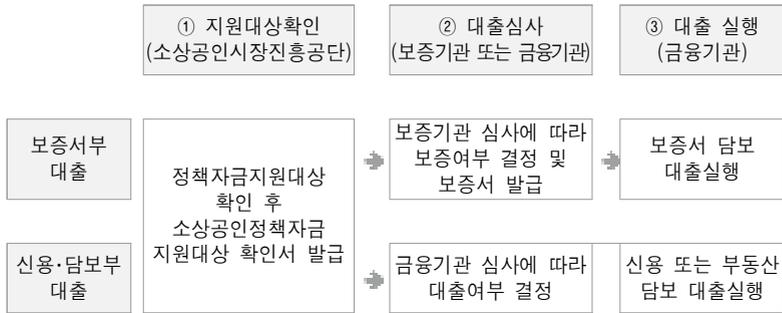
처리절차

-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대리대출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2,0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3-26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 및 영업지속을 제고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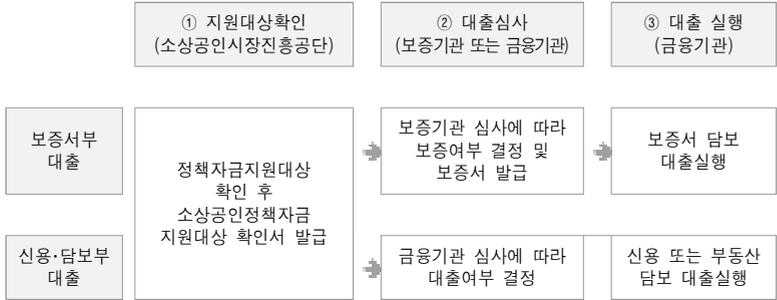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11,0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신용보증재단 이외에 다른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은 특정 보증기관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지원 대상 중첩을 피하기 위해 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후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에, 일반 소상공인이 보증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27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50%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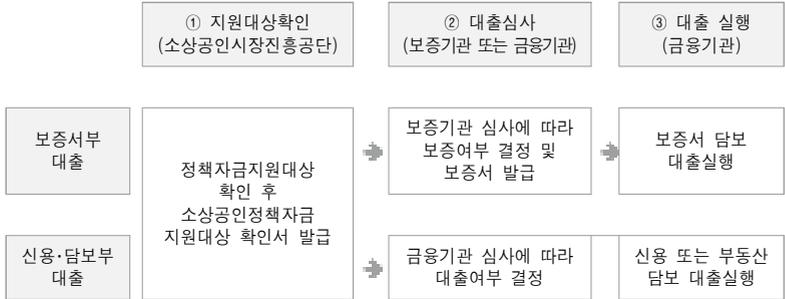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5,5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재외국민, 재외국민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 재외국민 :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재외국민 및 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15.1.22부터 발급)

3-28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혁신형 또는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 혁신형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지원방법 :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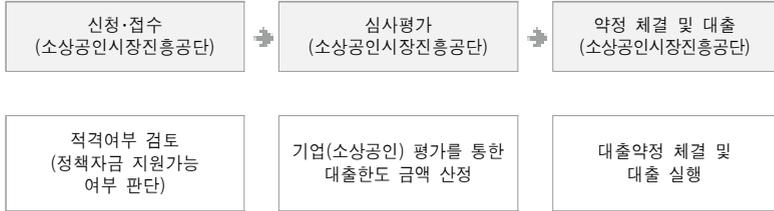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5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회생·개인회생·청산절차 진행 등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금수급계획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영업활동과 연계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3-29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개량·보수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량·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
 - *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등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우대

-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 지원내용**
- 공영 주차장 건립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시 국비 보조
 -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지하 주차장·주차빌딩·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 주차장 개량·보수 지원
 - 전통시장 고객전용 공영주차장의 개량 및 보수 시 국비 보조
 - * 주차장 노후시설 개보수, 차단기·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CCTV 등 설치 지원

-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 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 보조
 - * 주차 쿠폰 발행비용, 주차장 임대계약, 주차요원 인건비 등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실집행률 50%미만인 시·군·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청·접수

- '22. 5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광역시·도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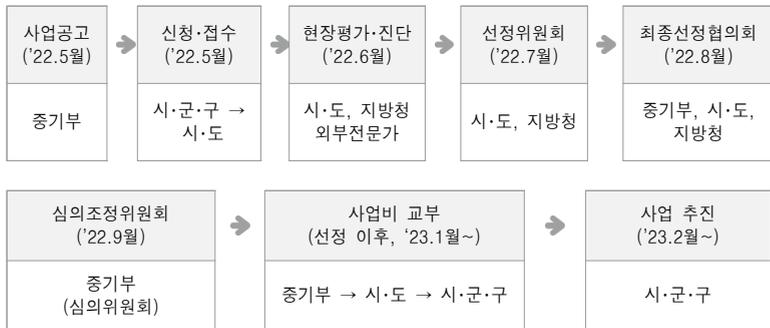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90곳 시장(752억원)
 - * '20년 지원현황(1,424억원) : 88곳(주차장 건립 지원), 20곳(주차장 개보수 지원), 27곳(공공·시설주차장 이용보조)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2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설현대화와는 달리 시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Q.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지 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30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 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

지원우대

- 화재위험이 높은시장(C등급 이하 우대지원)
-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인 시장
-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구간 노후전선정비사업(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지자체 부담가능)
 - 개별점포 국비 기준 125만원 이내(시장규모 당 최대 5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 신청·접수**
- '22.5월 중
 - 전통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시·도)를 경유하여 지방 중기청에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통시장 40곳 내외(60억 원)

* '21년 지원현황 : 60곳 시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2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31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자율적 사업설계를 통한 자생력 강화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22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

지원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선정 등급별 바우처 지원 한도〉

패키지 등급	가	나	다
패키지 지원 한도	6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 상인연합회 패키지 지원 한도는 별도 운영

- 패키지 활용 범위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구분	분야	패키지 활용 범위
사업 지원 패키지	공동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시장 진출 : 상권분석, 품목 개발,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등 ▶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신문, 잡지, SNS, 포털 등 ▶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상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온라인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플랫폼에 한함(자체 쇼핑몰·앱 구축 불가) - 도입, 구축, 운영, 프로모션(배송비 무료, 할인 쿠폰, 광고 등) 등
인력 지원 패키지	시장 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회 일반행정사무 수행 ▶ 이벤트·축제·행사 지원, 정부지원사업 신청·관리·정산 등
	배송 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리, 택배, 온라인 배송서비스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직원, 배송기사 등

* 각 분야별 사용 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사업부문별 상이

지원분야	사업부문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지원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온라인 플랫폼	▶ 국비 90%, 지방비·자부담 10%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시장 규모에 따라 국비 90~30%, 지방비·자부담 10~70%				
		구분	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영업 점포 수	~99개	100~499개	500~999개	1000개 이상
		국비	90%	70%	50%	30%
		지방비·자부담	10%	30%	5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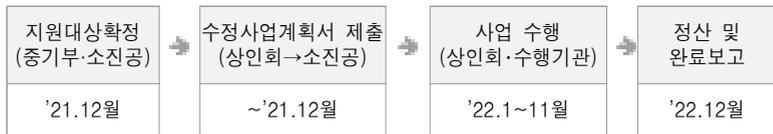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지원조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절차



지원규모 ● 350곳 내외 전통시장·상점가('22년도 예산 14,142백만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5, 7637, 7638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4)204-7893, 7896

3-32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1,50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용이 가능

상품권구매처 ● 지류상품권 : 16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수협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 전자상품권 :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BC카드, 우리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 모바일상품권 : 10개 금융기관 및 12개 간편결제사 앱(APP)

- 신한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농협상호금융·우체국·체크페이·비플제로페이·머니트리·010pay·페이코·핀트·제로페이온·핀크·티머니페이·syrup wallet·유비페이·택시제로페이

상품권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및 상권활성화구역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

● 전자·모바일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라인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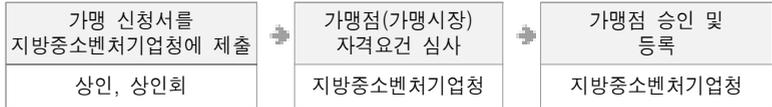
온라인 전통시장관

- ▶ (전자·모바일 결제처)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팜도시장, e경남, 온누리굿데이, 인더마켓
- ▶ (모바일 결제처) 놀장, 가치삼시다 플랫폼, 장보다, 꿈지락배송, 장봄, 위메프오, 종량제닷컴, 배달을거제, 맛있는소리 땃동, 장바오, 달려라큰동해
- ▶ (전자 결제처) 우체국전통시장, 피쉬세일, 제주전통시장, 온누리장터, 온누리시장, G마켓, 옥션

가맹신청

● 가맹점 등록 신청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포함)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 신청 및 등록절차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맹점 제한업종

-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지원내용

● 상인(개별가맹점)

- 상품권 판매, 회수수수로 국비 지원

● 상인회(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 환전대행 시 수수료 지급

상품권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전자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충전식(온누리멤버십)
- 모바일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규모

- '22년 3.5조원 규모 발행계획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 제로페이 콜센터(모바일상품권 관련 문의) : 1670-05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042-363-7641~5, 7650~52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5, 7899

3-3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 특성과 역량이 충분한 시장
 - 상인조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지원우대 사항(접수마감일 기준)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인 곳

신청 자격(접수마감일 기준)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각 80% 이상인 곳
- * 단,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에 한하여 각 60%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접수 마감일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시장
-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년 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내용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상인 조직화(협동조합 등)을 지원하여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성과 유지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지원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 조직 역량 강화, 상품 발굴, 입점지원, 인프라 구축, 공동마케팅 등 종합 프로젝트 지원
 - 온라인플랫폼 입점 이후 홍보, 고객관리, 상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등 지속 운영을 위한 상인 조직(조합) 설립 및 교육
 - 근거리 배달 및 전국 배송에 필요한 픽업·배송 인력 등 인적 지원, 배송센터, 공동장비 등 현장 인프라 구축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고객 모집을 위한 마케팅 지원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초역량 강화
 - 결제편의, 고객신티, 위생청결,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예방

* 첫걸음기반조성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

신청·접수

- 매년 6월경 다음년도 지원사업 공고 및 선정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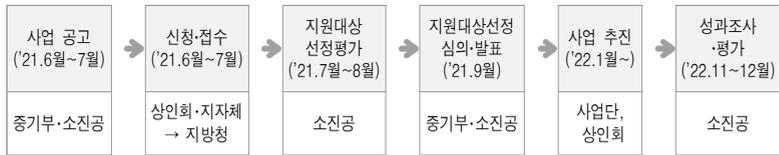
- 특성화 추진역량(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지원
 - 3대 고객서비스 혁신과제

- ① 편리한 지불결제
 - ② 고객신회(가격·원산지 표기, 교환·환불·A/S, 친절맞이 인사 등)
 - ③ 위생 및 청결(고객선 준수, 상품진열, 공용공간 청소, 정리정돈 등)
- 2대 역량강화 과제
- ① 상인조직 역량(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이사회·총회 운영 등)
 - ②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1점포1소화기,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예방훈련 등)

제출서류

-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77호)에 따름

사업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5곳* 내외
 -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2년간 시장 당 최대 1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10% 차등)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 2년간 시장 당 최대 6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1년차)~40%(2년차), 자부담 10%(2년차)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1년간 시장 당 3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10% 차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622, 762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인 없는 경우에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곳은 우선 첫걸음 시장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다음 단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단계 : 특성화 첫걸음시장 → 문화관광형시장육성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 없는 경우에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할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공고문의 지원대상 중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Q. 기존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번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나요?

A. 최상위 단계의 사업인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졸업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존에 첫걸음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문화관광형시장육성 또는 디지털전통 시장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시장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글로벌 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졸업 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34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청년몰 조성과 준비된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既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대상

- (조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
- (활성화 및 확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지원우대 사항(청년몰)

- (공통 우대사항)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 이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 (개별사업 우대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기준)

-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른 가점 차등 부여
- 공설시장, 지자체 소유부지,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우선 지원

지원제외(청년몰)

-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시장 내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시장
- ▶ 최근 3년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전통시장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시장

지원제외(청년상인)

- ▶ 미성년자
- ▶ '15~'20년 정부지원(청년상인 창업, 청년몰)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에 중도 포기한 자
- ▶ 도박, 유희 등 불건전 업종을 희망하는 자
- ▶ 대부, 유사금융 및 부동산 업종을 희망하는 자
- ▶ 청년상인 육성사업 세칙에 따라 청년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청년몰 조성(몰 당 2년 40억원) : 전통시장 내 일정구역 안에 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조성 등을 지원
 - 지원금액은 시장 여건 및 사업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15억 내외로 하되, 시장상황, 사업 규모 및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조정(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
-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 당 최대 10백만원)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 청년몰 활성화(몰 당 5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컨설팅, 교육, 조직화 지원 등 SW중심의 활성화 지원
- 청년몰 확장(몰 당 10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고객편의 시설, 공용공간(휴게실 등), 진입환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역민 소통공간(공공어린이집, 공용카페 등) 조성 등 HW지원

신청·접수

-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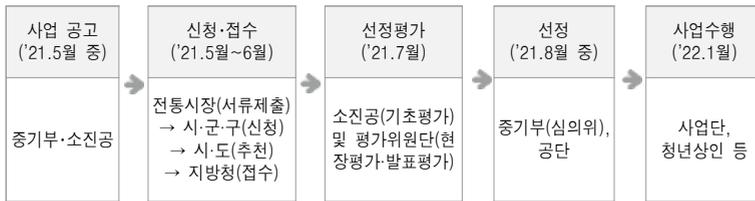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청년몰 조성) 상권활성화 수준, 성장가능성, 시장이 보유한 인프라 및 상인 역량, 지자체(상인회)의 지원계획 등
- (청년몰 활성화·확장)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제출서류

-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참조

사업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복합청년몰 조성 5곳 내외(신규 2곳, 계속 3곳),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 3곳 내외, 청년상인 도약지원 200명 내외(2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1차 모집) 조성2곳, 활성화·확장 3곳 (2차 모집) 조성1곳, 활성화1곳
 - * '20년도 시장 : '19년 선정완료, '21년도 시장 : '20년 선정완료
- 청년몰 조성: 2년간 몰 당 40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 청년몰 활성화: 몰 당 5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 청년몰 확장: 몰 당 10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 청년상인 도약지원: 1인당 최대 10백만원(국비 90%, 자부담 ~10%)
 -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 지원)
 -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81, 7785
- 청년상인육성재단 : 042-252-1414, 042-826-593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Q&A

Q. 만39세를 초과하면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청년상인의 나이기준은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Q. 지원자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입금 되나요?

A. 아니요 사업단을 통해 집행되거나 용역수행업체에 지급됩니다.

3-35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해당 구역의 특색을 반영한 상권 단위 지원사업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에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 ▶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 해당 구역 내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신청요건

-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최종적으로 상권관리기구에서 사업 운영)
-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 (예시)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폭 5% 이하 제한 등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 구역경계는 사업신청시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사업공고시)

지원우대

- 해당 구역에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 시 가점 부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디지털사업(중기부) 등)

-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구간별 가점 부여
- 해당 구역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공제 사업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율이 50% 이상에 대한 가점 부여

지원내용

-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 창업, 힐링(문화·예술) 등이 이루어지는 상권 조성
 - *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류, 디자인 등) 및 지역 역사자원, 인물 등과 연계
- 상권환경개선사업(H/W)과 상권활성화사업(S/W)을 추진
 -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신청·접수

- '22년 상반기 공고예정
 - * 시·군·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로 송부

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 가·감점 등 검토
- 현장·발표평가 : 사업추진 적합성, 역량, 경제성, 향후 관리계획 등 평가

제출서류

- 사업운영계획서, 지방비투자 협약서, 시·도 추천서, 상생협약서, 사업동의서(임차인·상인) 등
 -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상권활성화구역 당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 내의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 '21년 선정현황 : 총 25곳('18년 3곳, '19년 9곳, '20년 8곳, '21년 5곳) 선정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2, 7867, 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4, 7775, 7779, 77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상권 르네상스(상권 활성화) 사업의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원 부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을 포함해서 50%이며, 민간부담금(10% 이내)은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합니다.

Q. 상권관리기구는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상권관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민법」에 따라 설치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이며,

상권활성화사업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집행, 정산, 상권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36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저렴한 비용의 공제로로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로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지원대상

- 상인이 납부한 공제로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상품안내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 가입단위 :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 (종료일의 16:00까지)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별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점포휴업일당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 (가입기간 1년)〉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 배상책임	-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 배상책임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원)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별급 특약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별급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원)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점포휴업일당 특약	- 추가공제료 :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 - 점포휴업 일당(3일 초과)=복구기간 내 휴업일수X1일당 가입금액(5만원)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 주계약의 경우 100만원 단위로 가입가능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급별	주요구조부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가입이 안되는 점포

-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 ▶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3, 7976
- 콜센터 : 042-363-7877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www.fma.semas.or.kr

3-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예방 강화

전통시장·상점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전통시장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무등록 시장 포함)
 - 지자체 의견을 수렴(추천/제외)하여 예산 범위 내 점검대상 선정

지원내용

- 전통시장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점 검 내 용	비고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추진절차



지원규모

- 599개 시장 내외(예산 3,248백만원, 국비 100%)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826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Q&A

Q. 화재안전점검은 법정의무점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A. 화재안전점검은 '19년2월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의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3-38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화재 초기 진화, 대형화재로의 확산 방지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지원조건

-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25%이상인 곳

지원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 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추진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14,900개 점포 내외(78.4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9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7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지역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

Q&A

Q. 공용공간 CCTV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신 후 잔여 예산을 활용한 화재감시용 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등)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대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 강원도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 구, 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광역시 북구 기차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제2편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 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광역시 남구 둔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남구,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90 (052)243-7495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문해거리 28 2층	북구,중구,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상남도 창원시 상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 (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합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상주시,의성군, 청송군,영양군,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광역시, 전라도, 제주도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6 (064)739-92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서귀포시

제2편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031)204-30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도,인천광역시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이천시, 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 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 과천시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2 (031)677-6188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호~203호	안성시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 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재 단 명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0-4800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유의사항〉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추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 사업 추진일정,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